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2008년 10 월 6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포 립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지도교수 김기평 교수님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 월 6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포 립

포립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2008 년 10 월 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이론적 배경 연구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1.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배경	4
2.	중국의 회계제도	7
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현황	10
1.	국제회계기준의 설정과정과 역할	10
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12
제3장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비교	17
제1절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17
제2절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26
제3절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비교	33
제4장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35
제1절	기업회계기준 체제의 비교	35
1.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35
2.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37
3.	한·중 기업회계기준 체제의 비교	39

제2절	재무제표 체제의 비교	45
1.	대차대조표의 비교	46
2.	손익계산서의 비교	54
3.	현금흐름표의 비교	56
4.	자본변동표의 비교	58
제3절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의 비교	59
1.	한국의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	59
2.	중국의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	62
3.	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 평가비교	64
제4절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의 비교	67
1.	수익의 인식	67
2.	비용의 인식	69
3.	한국 과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71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6

표 목 차

〈표2-1〉 회계기준이 사회제도로 정착되는 과정	6
〈표 2-2〉 정치 및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회계제도의 변화	9
〈표 4-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36
〈표4-2〉 한·중 회계기준 구성내용의 비교	41
〈표4-3〉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와 중국 기업회계기준서의 비교.....	42
〈표4-4〉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비교표.....	45
〈표4-5 한·중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비교〉	46
〈표4-6〉 한·중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분류에 대한 비교.....	49
〈표4-7〉 한·중 대차대조표에 대한 비교.....	50
〈표4-8〉 한·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비교.....	55
〈표4-9〉 한·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비교.....	57
〈표4-10〉 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의 평가 비교.....	65
〈표4-11〉 한국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7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Bao Li

Advisor : Prof. Kim Ki-Pyu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global business landscape has grown and changed rapidly,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etting along with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has changed to meet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ince the financial crises in 1996. As a member of WTO, China has already changed the accounting standards which are closed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keep up with a global competition under macro-economic initiated by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1992 memorandum of Korea and China, Korea investment toward China has been greatly increasing and due to the economic, politic and culture interchange, numbers of Korea companies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difference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ystem. Curren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ompany performance because financial information originates in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Many of these companies effectively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using different accounting rules and regulations, thus creating different values or measures for the same economic ev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rs oriented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overcome these problems in two countries with more transparent and reliable inform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ccounting systems of both countries.

This research discusses several aspect as follows:

First, the processes of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in both countries were reviewed. Problems that had been exposed in such processes were pinpointed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accounting systems.

Second, the present status and major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Chinese accounting system was analyzed.

Third, differences in the accounting system, class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in the perception of fundamental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detail as an attempt to determine the gap of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between both countries.

Although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of both countries look identical with each other, we can understand how China's accounting standard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ever since the formation of New China. And in practical expectation effect, it can decrease the disadvantage which occurs because of misunderstandings and ignorance.

However, this problem is caused not only when following China's accounting system, environmental standard, and environmental requisites in trade and actual field investment. But even when following standards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s, accounting custom and practical affairs.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economic exchanges are rapidly activ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hat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make joint studies and efforts to establish a joint reference system in response of demanding in both countries to use a common accounting information in practi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1979년부터 대내적으로는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29년이 지난 오늘까지 연 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실속 있는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매력 있는 거대한 상품시장, 자본시장 및 인력 그리고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메카니즘을 채택하여 구 소연방의 통일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1978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였다. 그 이후로 해외시장의 개방을 서두르면서 회계에 있어서도 자본시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회계로 바꾸어왔다. 중국은 빠르게 경제개방을 서둘러 2001년 WTO에 가입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새로이 구축 하여 이제는 세계경제의 주요한 일원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확대 및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시행으로 대 중국투자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21세기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 추세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해외투자의 제 1위국으로 부상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한 이후에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등 면에서 많은 교류가 해왔으며, 특히 경제교류 중에서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했고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도 양국 간의 경제교류 중에서 많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경제교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는 각국의 사회·경제 적 환경에 따라 그 나라 고유한 회계 환경에서 형성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회계기준은 다양하다.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이 그 나라 특유한 사회·경제적 환경,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형성한 듯이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충돌도 일어난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이렇게 빈번 한 오늘에 양국간의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 활동상 많은 제한 점이 있어, 기준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양국 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기업 활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간의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며 경제거래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제도는 주로 1985년에 제정된 「회계법」, 1992년 개정된 「기업회계준칙」이다. 그리고 「중국기업회계준칙」은 1992년에 개정 후 부터 계속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기업회계준칙을 보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 주로 문헌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한·중 양국 간의 기업회계기준에 관련된 규정과 연구 논문, 간행물 등을 수집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배경과 중국회계 제도, 그리고 국제기업회계기준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및 발전과정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및 그 체제의 차이, 재무제표 체제상의 차이,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배경

가. 회계와 사회 환경

회계는 사회적 산물이며 회계를 형성하고 있는 법규, 교육기관, 전문 기관 및 그 활동, 회계연구 등을 총칭하여 회계제도라 하며, 이는 일종의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회계제도의 형성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특별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 회계 관습 등이 그 사회에서 발전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사회제도로 형성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맞춰 적용시키는 것이다.

회계는 사회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회계와 사회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형성 발전되어간다. 회계제도의 형성과정을 보면 특정한 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회계실무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누적되고 회계습관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승인을 받아서 또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형성하게 된다.

오늘날의 회계환경은 많은 측면에서 변하고 있는데,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은 기업 활동과 경제 환경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는 빈번하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투자, 기술협조 등 경제활동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회계제도와 회계기준은 그 나라의 특정한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형성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다양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회계제도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국제 적인 경제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와 회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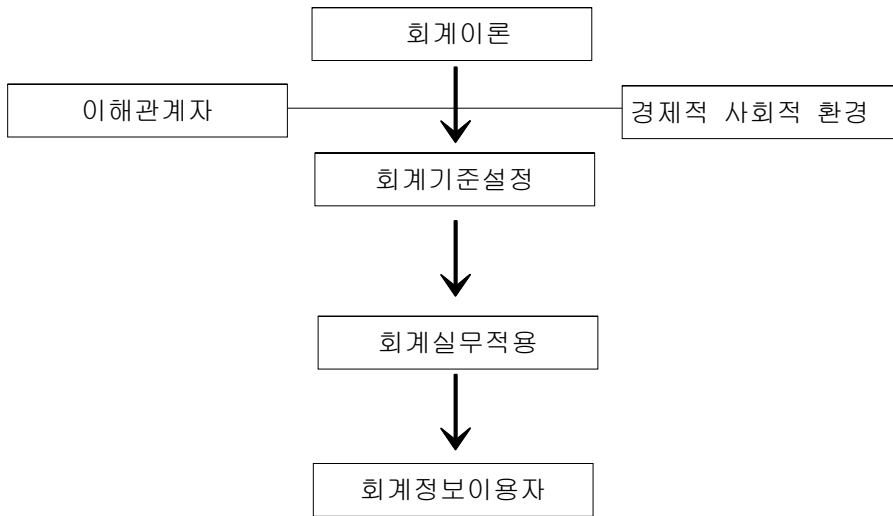
나. 회계기준의 일반적 모형

회계학은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현실 문제를 반영하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사회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다. 기업의 회계 행위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서 회계기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간다.

회계기준이 여러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모형을 <표2-1> 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회계기준이 기업회계제도의 핵심 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모형을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¹⁾

1) 김옥태,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p.3~4.

〈표2-1〉 회계기준이 사회제도로 정착되는 과정



회계기준이 사회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회계이론, 회계정보 이해관계자 및 일정한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영향으로 회계실무가 먼저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사회적 승인을 받으면 사회적인 제도로 성립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기준의 설정에 대한 배경이 되는 요소들의 영향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이론: 회계기준 설립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회계이론은 회계 기준의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회계학교수에 의해 주도 되나 기준제정기관, 회계법인 및 일반기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연구 발전된다.

②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회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공인 회계사와 상장회사협의회 및 성공회의회 등으로 대표되는 재무제표 작성 자화 회계정보이용자인 증권분석사, 투자자, 정부 또는 일반대중 등으로 형성된다.

③ 사회·경제적 환경: 회계기준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제사회 발전의 상황 및 정책과 주요 추진방향과 관련 상위 법규 등이다.

2. 중국의 회계제도

가. 중국 회계제도의 특성

자본주의 국가의 회계제도와 비교한 중국회계제도의 특성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한문성, 2001).

첫째, 자본주의 국가의 회계제도에서의 회계목적과는 다르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1조에서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회계원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호·경제관리 강화·경제효과와 이익의 향상작용에 회계업무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 제도에 대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이 크다.

셋째, 회계제도는 시장경제의 산물로서 그로부터 산출·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시장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환경에 따라 회계제도도 변화하므로 시장화의 정도는 회계제도를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도입기간이 짧고 아직 불완전한 상태 이므로 회계제도 역시 상당히 미숙한 정도라 하겠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은 주어진 재량 내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계약경영 책임단위로 활동하고 독립채산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중국회계제도는 계약경영책임단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미시적 기능도 제시하고 있지만 공유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민경제의 통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거시적 기능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중국회계제도는 주로 기업의 물적 재화와 화폐자산의 운용과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에서 그 이용 상태를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경영과정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중국회계환경의 변화

현재 중국은 적극적으로 경제구조와 성장방식을 변화시키고, 장기 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최진현, 2000).

① 소유제도의 조정·완비 - 기업의 소유권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집체소유제, 주식제 등 여러 가지 소유제도를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공유제란 국영기업에서 발전한 국가소유의 자율경영체와 집체²⁾뿐만 아니라 국유와 집체적 소유의 개념을 혼합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② 국유기업개혁의 가속화 - 국유기업의 개혁의 방향은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조직개편과 개조뿐만 아니라 자본을 시장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시장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업종 및 소유형태를 뛰어넘는 다국적 경영방식을 갖춘 기업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③ 분배구조와 분배방식의 완비 - 분배구조 및 분배방식의 완비란 노동에 의거하되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합법적인 소득은 법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과 합법적인 영업으로 부유해지는 상황 과 더 나아가 자본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인정하려는 것이다.

④ 시장 메카니즘의 이용 및 대외개방의 확대 - 대외개방은 장기적인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따라 전반적이고 다각적이며 광범위한 대외개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경제를 질 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 중간으로 계획경제에 맞는 합작기업의 형태이나 기업성과를 이 집체에 축적하여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단위경제의 개념.

〈표 2-2〉 정치 및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회계제도의 변화

정치제도	경제제도	회계제도
-민주제도 -안정과 단결유지 -기구의 개혁	-소유제도 조정 -분배구조와 분배방식 -국유기업의 개혁	-국가의 거시경제적 회계정보 요구 충족 -경영관리 요구 충족 -국유기업의 이윤분배의 경우 (1979-1982) 이윤유보제→ (1983-1985) 이윤을 세금으로 대체→ (1987-1993) 계약경영책임제→이세공유제
-법제강화 -감독제도 완비		-회계법, 통칙, 준칙 등의 준비
	-시장메카니즘의 이용 -대외개방의 확대	-자본주의 회계시스템의 원용 및 개선 -자본주의 회계요소와의 개념적 통일 시도

중국의 정치제도의 변화는 경제제도상의 소유제도와 분배구조 및 분배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회계정보의 요구도 국가의 거시 경제적 관리 통제에 필요한 요구에서 기업경영관리에 필요한 요구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하고 있다. 또한 법제강화와 감독제도의 완비는 회계 관련 법률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 메카니즘의 이용과 대외개방의 확대는 자본주의 회계시스템 및 회계요소의 개념과 회계처리방법의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법에 의거하여 건전한 재산증식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를 확립하여 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과 평등한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을 감독·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회계제도는 1950년 정무원 재정 경제위원회의 〈회계제도의 통일에 관한 초

안>에 대한 훈령을 시초로 1970년 말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의 실시로 중국최초로 회계분야의 법률화를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 기업재무통칙(1992년), 기업회계준칙(1992년), 업종별 재무제도(1992년)의 제정으로 비로소 어느 정도 서구식 회계제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의 설정과정과 역할

세계화, 국제화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국제회계기준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는 재무보고의 원칙인 회계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 기구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회칙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일반회계원칙을 제정·공표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규제, 회계 원칙 및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활동한다”라고 그 목적을 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이사회, 자문그룹,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13개국의 회계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주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확정, 공표에 대한 권한과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운영권을 갖는

다.

나.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절차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은 주제의 채택에서부터 국제회계기준으로 공포하기까지 대개 3년간을 요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제의 선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할 주제는 이사회의 대표, 회원단체, 자문그룹구성원, 사무국 등에 의해 수시로 제안된다.

둘째, 논점개요서의 작성이다. 추진위원회는 검토한 모든 논점을 정리 하고 논점개요서를 작성한다.

셋째, 원칙서의 작성이다. 논점개요서가 이사회에 심의된 후에 추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견으로 원칙서를 작성한다. 원칙서에는 공개초안에 포함될 회계원칙을 기술하고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중 특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선택의 이유 및 기타의 방법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기술한다.

넷째, 공개초안의 작성이다. 추진위원회는 원칙서 및 원칙서에 대한 논평을 기초로 공개초안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사회는 공개초안을 심의하고, 이사회구성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개 초안을 영어로 공포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단체는 각각 모국어로 번역하여 공포하며,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의 공포이다. 기초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논평을 정리, 검토한 뒤에 국제회계기준의 초안을 작성한다.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논평의 분석 및 논점항목에 관한 기초위원회의 제안을 정리한 요약 서를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회계기준으로 공포한다.

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성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는 1996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

는 30개의 국제회계기준을 공표 하였다. 국제 회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재무보고를 개선시키고 조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증권감독 협회(IOSCO)는 증권을 국가 간 발행하거나 국제적 발행에 있어서 상호 수용 가능한 국제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증권 거래소에서 외국의 증권발행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신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정상 생산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

② 국가 간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정보공시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국가 간 제도차이를 제거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국가 간 합작계약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④ 해외자금조달자 또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회계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나 정보제공자의 유용성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는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 다국적 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된 회계정보의 측정과 전달 그리고 그 평가의 필요성이 검증됨에 따라 주로 종래의 재무회계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회계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국제화함으로써 파생 되는 회계 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물러 (Mueller)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회폐단위의 환산문제

② 국가 간 회계의 국제비교(회계개념과 회계방법의 차이 비교)

③ 국제적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확립

- ④ 국제적 기업 간의 회계의 통일화
- ⑤ 각국의 특수회계문제의 분석
- ⑥ 복식재무제표의 작성
- ⑦ 인플레이션 조정회계
- ⑧ 구분보고서의 작성
- ⑨ 이전가격의 설정 등의 문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는 국제회계기준 1호(재무보고서의 발표)에서 41호(농업회계)까지의 기준서를 발간하였다. 많은 기준이 그 동안 개정되고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기준은 다른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물론 기업 실체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취급한다.

동 이사회는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기본구조(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를 발표하였으며, 아래의 항목에서 열거한대로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 ①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개발하며, 기존의 국제회계기준을 재검토 하도록 한다.
- ②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인정된 선택적인 회계처리를 감소시키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규정, 회계기준과 절차의 조화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국제회계기준 IAS의 31개의 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³⁾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최초채택)

IFRS 2, Share-based Payment (주식기준 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기업결합)

IFRS 4, Insurance Contracts (보험계약)

3) 조승제,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발전적 과정과 조직구조에 관한 소고」, 조선대 경영경제연구 Vol.23 No.1 2000, p.169.
 김원주, 「한국과 중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접근」,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pp.29~32.
 김현진, 국제회계기준을 준거로 한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매각 및 중단사업 목적의 비유동자산)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보고서의 발표)

IAS 2, Inventories (재고자산)

IAS 7, Cash Flow Statements (현금흐름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발생한 사건)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건설 공사계약)

IAS 12, Income Taxes (법인세)

IAS 14, Segment Reporting (부문별 보고)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IAS 17, Leases (리스)

IAS 18, Revenue (수익)

IAS 19, Employee Benefits (종업원복지)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국고보조금 회계 및 정부지원금의 공시)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환율변동의 영향)

IAS 23, Borrowing Costs(금융비용)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특수관계자 공시)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퇴직연금플랜의 회계와 보고)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합병 및 개별 재무보고서)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관계회사투자(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재무보고)

IAS 30,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의 재무보고서의 공시)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합작기업의 투자)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재무공시)

IAS 33, Earnings per Share (주당순이익)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자산의 감액손실)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준비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금융상품:인식 및 측정)

IAS 40, Investment Property (투자자산)

IAS 41, Agriculture (농업회계)

제3장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비교

제1절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시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중요 변천과정을 고찰 하여본다.⁴⁾

가. 회계원칙 잉태기의 회계기준 (1958~1974)

한국의 기업회계원칙 제정실무위원들은 원칙 제정의 기본방향 다섯 가지를 채택하였다.

- ① 원칙과 내용을 평이하고 구체적인 설명식으로 전개
- ② 시가주의보다 합리적인 원가주의 평가 채택
- ③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
- ④ 당기업적주의 채택
- ⑤ 장래 상법과 세법의 개정을 전제로 초안 작성

기초소위원회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된 기업회계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설:

일반원칙: 진실성의 원칙
정규부기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4) 김기명,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5집 제2호 2001, 12, pp24~40.

확실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잉여금 구분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2장 손익계산서

제3장 잉여금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장 대차대조표

한국 최초의 기업회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목적과 회계수단과의 관계가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② 회계원칙의 기본이념이 진실성의 원칙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후 1964년 5월 27일 상법의 개정으로 재무제표규칙의 부분 수정이 있었으며 1968년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972년에 실시된 8·3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조치 시행 후 1972년 12월 30일에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업회계원칙의 자율적 적용으로는 대내외적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제도적이고 강제력을 갖는 회계원칙의 제정이 요구되어 재무부 증권심의위원회의 기업회계분과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기업회계원칙의 개정 작업이 197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나. 회계목적 정착기의 회계원칙(1976~1980)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과정을 거쳤으나 당초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고 기업회계원칙의 개정안은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대통령령 제7199호로 1974년 7월 18일에 공표되었고 재무제표규칙의 개정안은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되어 재무부령 제1098 호로 1975년 5월 17일에 공표되었다.

재무부 증권심의위원회의 기업회계분과 위원회에 의하여 개정작업을 벌였던 회계기준의 제2차 중간보고서 형식의 기업회계원칙과 1차 개정된 재무제표규칙을 1976년 7월 22일 공표하였다. 위의 두 회계기준은 최초의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 적용의 근거가 대상기업에 따라 이원화되었으나 1976년을 기점으로 회계목적의 명시, 재무제표체계의 변화, 최초 회계기준의 문제점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진행된 기간이었다.

다. 회계제도 통합기의 회계기준 (1981~1985)

70년도 후반부터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기업규모가 국제화되면서 기업의 공시기능 강화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1년 1월 24일 증권관리위원회의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제3차 중간보고로 기업회계원칙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같은 해 6월 3일 재무보고시 제891호로 재무제표규칙을 개정 공표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근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개정되었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과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을 통합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81년 12월 23일 기업회계기준이란 단일명칭으로 공표하였다.

그 동안 이원화되었던 회계기준이 통합되고 법적 근거도 명시되어 한 국 회계제도

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며 외부감사대상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통일된 회계기준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상법은 1963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된 이래 경제여건의 변화와 기업사회의 실태를 외면한 채 독존적 최고의 법률로서 20여 년간 사기업 경제활동을 지배하여 왔다. 특히 변화하는 회계기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부실의 제도적 예방을 위한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법의 규정이 기업회계의 실정에 많이 접근하였고 기업회계기준도 상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 개정이 요구되었다.

한편 재무부의 1975년 11월 17일자 증권보험국의 “증이” 공문이 폐기 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낸 “증이”의 내용은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특별감가상각비, 탐광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기술개발 준비금 등의 감사의견표시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 하더라도 이를 적정의견으로 표명하도록 권고한 행정지시 이었다. “증이”는 회계감사 시 적용되는 지시이었으나 실제로 회계실무에서 오히려 채택되어 회계기준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제도 환경여건의 변화와 기업회계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84년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내용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액을 5년간 매기 균등액 이상을 추가 계상하도록 경과조치에 규정하였으나 1985년도에는 기업수익성의 저조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의 추가설정을 유보하도록 1985년 12월 27일 기업회계기준을 일부 개정 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제도 통합기의 회계기준은 1981년도의 기업회계기준 으로 통합한 후 1984년의 상법개정, “증이”의 폐지 등의 회계환경 변화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1985년에는 1984년 개정부분의 완화조치로 일부 개정이 있었다.

라. 회계기준 개혁기의 회계기준(1990~1996)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면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영환경이 국제화되면서 회계기준의 선진화가 요청되었다.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2년여의 준비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1990년 3월 29일 획기적 개혁안을 확정하여 즉시 4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내용 중에서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유효이자율법의 도입,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주당순이익의 공시 등은 한국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새로이 채택된 획기적 개혁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후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주식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 한 경우 저가평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를 1990년 9월 29일자로 개정하였고, 이를 다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을 대차대조표액으로 한다는 개정을 1992년 7월28일에 단행하였다.

1994년 4월 30일 순운전자본의 재무상태변동표에서 현금흐름표로 변경 되었으며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했던 세법상의 특별상각을 폐지하였다.

연결재무제표기준은 1984년 9월 1일 기업회계기준으로부터 독립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동 준칙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2년 6월 27일자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다시 1994년 6월 1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 1990년의 대폭적으로 회계기준을 개정한 후 한국의 OECD가입에 때맞추어 무역의 자유화,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혁이 1996년 3월 30일에 개혁이 단행되었다.

회계기준 개혁기의 기업회계기준은 1990년의 획기적 개정, 1994년의 현금흐름표 개정, 1996년의 국제화 개정을 진행하면서 명실상부한 회계 기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마. 회계기준의 국제화 (1997~현재)

1997년 12월초부터 대미달러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2월 중순 경에는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되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외화 환산손실의 발생으로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증권 감독원은 12월 1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

를 소집하여 외화환산에 대한 회계방법을 심의하여 1997년 12월 24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였던 외화환산차는 환율조정차로 변경하여 이연 자산으로, 외화환산대는 환율조정대로 변경하여 이연부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996년 12월 27일 자본조정으로 초래하도록 개정되었던 외화환산차는 무효화되고 1981년 최초의 기업회계기준대로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 대로 환원되었다.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 계상년도부터 최종 회수일 또는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개정 하였다.

1998년에 접어들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경제 개혁 을 약속하는 제1차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경제개혁의 내용으로는 금융 개혁, 시장개방,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기업의 지배 구조문제는 재벌총수 1인에 좌우되는 전형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의향서에는 통화정책, 자본시장개방, 금융구조조정, 외화관리 및 환율정책, 무역정책,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자료공개 등 한국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IBRD는 IMF가 제시한 방향을 추진하면서 회계전반에 걸친 개선요구사항을 한국정부와 협약하였다.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가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고 1998년 4월 16일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은 한국회계학회 초청강연에서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회계정보에 대한 강제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재무회계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IBRD와의 협약과 금융감독위원장의 회계제도 개선방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의 회계기준은 회계규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사회의 자율화 바람을 타고 무수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때에 행동의 선택 에 있어 의도적 제약으로 정의되는 규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을 대폭 국제적 회계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시행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을 신설하였다.
- (2) 특수관계자와 공정가액의 정의를 명시하였다.
- (3) 자산재평가의 특례조항을 삭제하였다.
- (4) 금융상품계정을 신설하였다.
- (5)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신설하였다.
- (6)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 하에서 그 동안 개정 논란이 되어 왔던 문체규정들이 새롭게 신설·폐지·수정·보완되었으나 한국의 기업 회계기준이 법조문 형식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조항문구 수정이나 조문 삽입 이라는 뻔질식 개정에 그쳤다.

1998년도 12월의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개정이 단행된 후 1999년 12월 31일에 금융감독원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무 회계개념체계라는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재무제표의 목적

제3장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제4장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

제5장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제6장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제7장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측정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서언에서 “본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 의 재무 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를 근간으로 우리의 실정을 반영하고 우

리의 회계기준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회계 기준의 모델로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개념체계의 설명도 범조항 형식이 아니라 해석설명형식을 도입하였다 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 업무를 위탁 받아 명실상부한 독립전담기구로서 업무를 관장할 한국회계연구원이 1999년 9월 1일 설립되고 연구원내의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가 되어 8월 25일에는 기업회계기준의 구성체계에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다.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발간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칙 및 해석의 관련조항을 대체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가 되고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와 제정절차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입장을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제2절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1949년 신 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회계제도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신 중국성립 후 중국의 회계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회계제도와 시장경제회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회계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1978년 12월 대외개방 방침결정을 한 경제개혁이전과 이후로 분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 경제개혁 이전

경제개혁이전의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

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에 관련된 제도들이 정치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건국초기(1949년~1957년),대약진기 회계제도(1958년~1961년), 경제조정기(1961년~1965년), 문화대혁명기(1966년~1976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1) 1단계: 건국초기(1949년~1957년)

건국초기에 중국의 국영기업은 구 소련의 경제관리 체제와 회계원칙 및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지 않은 사영기업에서는 중국시대의 자본주의 회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1950년 3월에 중앙정부 정무원은 「국가재정 업무경제의 통일에 관한 결정」과 「회계 제도 초안 작성」이라는 훈령을 발표 하였으며 곧이어 회계제도처를 설립하여 전국의 회계업무를 지도하였다. 후에 이 회계제도처는 ‘會計制度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수지·물자·현금 관리를 통일하여 재산의 분산과 낭비를 막았다. 또한 1950년4월에 「중국업 소속기업 통일회계제도」를 제정함에 따라 주관부문을 중심으로 한 회계제도의 설립이 시작되었다.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는 계획, 재무, 통계 및 회계 등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1954년12월 「재정부」는 정식으로 「국영공업기업 통일회계 과목」과 「국영공업기업 통일재무제표와 양식」을 공포하였다. 한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위의 두 개의 공포는 국가 대규모 경제건설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재정부」는 1955년 11월 두 가지 규정을 수정 하여 각각 「국영공업기업 기본업무 표준재정계획」과 「국영공업기업 기본업무 통일재무제표와 설명초안」을 공포하고 195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들은 소련의 1954년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2) 제2단계: 대약진시기 회계제도(1958년~1961년)

건국이후 8년간 재무제도와 회계제도의 지도사상을 소련의 경험을 기계적이고 그대로 도입한 반작용으로 하여 대약진 시기에는 ‘정치수첩은 필요하지만 경제수첩은 필요가 없다’는데 따라 장부 없는 회계방식을 수행하여 대중에 의한 자금관리를 추진하고 회계작업을 간소화하였다. 대 약진시기에 수많은 회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 단위별 독립채산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종합계획의 수행에 불리하게 되었다.

(3) 제3단계: 경제조정기(1961년~1965년)

대약진과정에서 정책과 실무의 착오로 발생한 손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1960년 말 경제 제1차 조정기에 들어가 1961년 11월 국무원이 「국영기업에 있어서 회계처리업무의 규정(초안)」에 의하여 종합적인 회계제도를 수립하였다. 1963년 1월 국무원에서 「회계직무직권시행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회계직원의 직무책임, 권한, 직명, 임면, 상벌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분의 회계업무를 강화시키고 회계제도를 건전히 하며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독자적인 「증감부기법」을 개발하여 「대차 기장법」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4) 제4단계: 문화혁명시기(1966년~1976년)

문화대혁명기간에는 사상과 정치가 우선하고 경제관리와 회계가 경시되고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계제도는 재폐지 되었다. ‘四人幫’은 「회계직무직권시행조례」가 회계직원을 속박하는 것이며 감독 지상주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고 회계제도는 ‘이윤에 의한 통치’라고 비판 하고 회계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많은 회계부문은 축소되어지고 회계 직원은 전임(轉任) 되었다.

나. 경제개혁 이후(1977년~현재)

중국회계제도는 개방이후 중국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국유기업(SOE)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중국회계제도의 발전은 주로 SOE의 개혁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왔다. Xiang(1998)은 개방이후 중국회계제도의 발전단계를 1992년을 전후한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1992년은 「재정부」가 중국의 개념체제서에 해당하는 「기업회계준칙」을⁵⁾ 제정한 연도로서 이의 제정은 중국이 구소련으로부터

5)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준칙과 구체준칙으로 구성되는데, 1992년에 공포된 기본준칙이 개념체제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1997년부터 제정·공포되기 시작한 구체준칙은 우리나라 KASB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슈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6월 현재 16개의 구체준칙이 제정되었는데, 이하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준칙인 개념체제서를 의미한다.

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회계체제에서 영미식 회계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1) 1단계: 개방이후부터 1992년까지

개방이전 중국의 회계체도는 구소련의 회계체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시스템에 적합한 것이었다. 자연히 회계의 주요 기능도 경제계획과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특히 개방이전 중국경제를 주도했던 SOE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생산량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단순 제조단위에 불과하였으므로, 다양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계가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개방이후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육성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 (예: 투자자, 기업경영자, 재무중개인, 정보중개인 등)의 수요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방 초기에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회계체도를 수정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불가함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발전되어 온 영·미식 회계체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85년에 「중외합작경영기업회계제도 (Accounting Regulations for Joint Ventures(이하 ARJV)」를 제정하였는데, 이 회계규정은 비록 중외합작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개혁이후 중국이 영·미식 회계를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되었다. 이 회계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1984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해외 직접투자가 \$30 억에 달하면서 중외합작기업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992년에는 「재정부」가 두개의 회계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하나는 「外資企業法 (Rules for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서 중외합작기업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새로운 규정은 1985년에 제정한 ARJV를 대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이 국제회계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 「재정부」가 1992년에 제정한 또 하나의 회계규정은 「Rules for Experimental Shareholding Corporations(이하 RESC)」인데 이는 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RESC는 이 무렵 주식회사로 전환한 SOE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영·미식 회계를 내국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RESC가 제정되기 이전 모든 SOE들을 「공업기업회계준칙(Accounting Regulations for State Industrial Enterprises)」이라는 회계규정을 사용하였는데, 이 회계규정은 1989년에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이 개방 이전에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구 소련식 회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92년 RESC의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 되는 회계규정과 내국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규정의 차이가 크게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회계규정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제각기 달리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통일된 체계가 없었다.

(2) 2단계: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본격적으로 회계 기준의 제정을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라고 보는데, 이는 개념체계서에 해당하는 「기업회계준칙」의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한 연도가 1988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경제개방을 선택한 것이 1979년인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 영·미식 선진 회계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약10년 정도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이1990년대 초이지만, 선진화된 회계인프라의 중요성을 비로소 절감하게 된 것이 경제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 이므로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중국과 유사하게10년 정도인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술하였듯이, 중국의 「재정부」가 본격적인 회계기준의 제정에 착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나라의 개념체계서에 해당하는 「기업 회계준칙」을 제정한 것이다. 1992년에 제정되고 1993년 7월 1일자로 유효해진 「기업회계준칙」은 중국이 구소련의 회계제도에서 탈피하여 영·미식 선진회계제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기업회계준칙」은 국제회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중국 내의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회계준칙」의 제정으로 인해 최소한 개념적 측면에서는 정부소유 SOE와 주식회사로 전환한 SOE에 적용되는 회계가 동

일해졌으며,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던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를 적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적으로 개념체계서이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재정부」는 1993년 2월에 30개의 구체적인 회계기준(이를 구체준칙이라고 부름)을 제정하기 위한 3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업들은 회계처리방법이 당장 필요하였으므로, 「재정부」는 1992년 「기업회계준칙」의 공포와 함께 13개에 달하는 산업별 회계규정도 제정·공포하였다.⁶⁾ 이 산업별 회계규정은 구체준칙이 제정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는 전통적인 회계처리방법을 단순히 영·미식 회계체계 안에 이식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Xiang, 1998).

한편, 3년에 걸친 「재정부」의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따라 30개의 구체준칙이 공개초안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첫 번째 구체준칙이 발효된 것이 기업회계준칙 제정된 이후 무려 5년만인 1997년이고, 12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은 16개에 불과하다. 이는 비록 중국이 야심적으로 회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본시장 환경이 성숙되지 못하여서 회계개혁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Tang(2000)은 이러한 난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대다수 회계사들이 구체준칙제정의 지침이 되는 기업회계 준칙의 개념적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장경제를 위해서 왜 회계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회계사들도 많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실무와 관행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중국의 회계개혁을 지연시키는 두 번째 난관은 국제적 수준의 회계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자본시장참여자들 간에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준의 회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용태도를 보이는 집단을 회계학계이며, 개혁을 주도하는 재정부도 때때로 국제회계실무가 난해하거나 이로 인해 회계

6) 관련 13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제조업,도소매업,일반운송업,철도운송업,항공운송업, 농업, 우편및 통신업,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은행업, 보험업, 관광및 외식산업, 해외경제협력.

정보의 구축과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면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투자자와 같은 회계 정보이용자들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새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잘 알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 자본시장에 아직 기관투자자들과 같은 세련된 투자자 집단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수탁책임(accountability)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며, 일부 경영자들은 재무정보의 창출과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효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까지 믿고 있다.

중국 회계개혁에 세 번째 장애는 회계산업의 미성숙과 이로 인한 회계 감사인의 자질미달과 독립성의 결여이다. 전술하였듯이, 중국의 최초 회계 법인은 1980년에 설립되었고, 1991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도입된 후 단기간 내에 많은 회계사들이 배출되고 회계법인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정부기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태생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주책회계사협회」도 관제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독립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회계역사가 짧은 관계로 회계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로 인해 회계사들의 전반적인 자질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아울러 회계사들의 직업윤리가 성숙할 시간이 없었던 점도 독립성 결여의 원인이 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회계산업의 미성숙을 이유로 회계학자를 포함한 많은 회계관련자들이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이 아직까지는 중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3절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비교

1. 건국초기(1949년~1957년) 중국의 국영기업은 사회주의 국가인구 소련의 경제관리체제와 회계원칙 및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지 않은 사영기업에서는 구 중국시대의 자본주의 회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회계제도는 선진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1958년에 한국 최초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였는

데 내용면이나 체계면에서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였다.

1958년~1974년 사이 한국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 되었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년~1966년)사이에는 「증권거래법」과 「상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회계기준은 경제개발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회계제도가 개선하고 있을 때 중국의 회계제도의 발전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야 했다. 건국초기 소련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회계제도가 활성화를 보이고 있을 때 1958년~1960년 사이 중국의 대약진 시대가 열리면서 회계의 대약진을 맞아 수많은 회계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한차례의 시련기를 맞았다.

경제조정기(1961년~1976년)에는 경제 제1차 조정기에 들어가 회계업무를 강화시키고 회계제도를 건진히 하여 회계의 두 번째로 되는 부활시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던 중 문화혁명시기(1966년~1976년)기간에는 회계가 경시되고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계제도는 재폐지되어 두 번째의 위기가 있었다.

2. 한국의 제3차 5개년 계획(1972년~1976년)과 제4차 5개년 계획(1977년~1981년) 사이 상장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외부감사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비공개기업들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준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여 1974년부터는 상장법인과 일반 법인이 적용받는 회계원칙이 이원화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기준은 1981년~1998년 기간에 증권관리 위원회의 산하에 있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맞이하여 1989년까지의 개혁개방의 초기까지 회계제도 저온 부활기였으며, 중국특유의 회계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사이 법인세제도가 도입되고 「회계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대외개방의 수요와 경제개혁의 발전에 따라 회계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1992년 11월 30일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에 비해 11년 정도 뒤늦게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3. 한국은 1998년~2000년 사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던 것을 정부주체에서 민간부문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0년 8월

25일 회계연구원이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회계연구원
에서 「기업회계기준서」를 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1993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에 접근하려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아직은 정부주체 하에 「기업회계기
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2002년 3년 내에 기업회계기준체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제4장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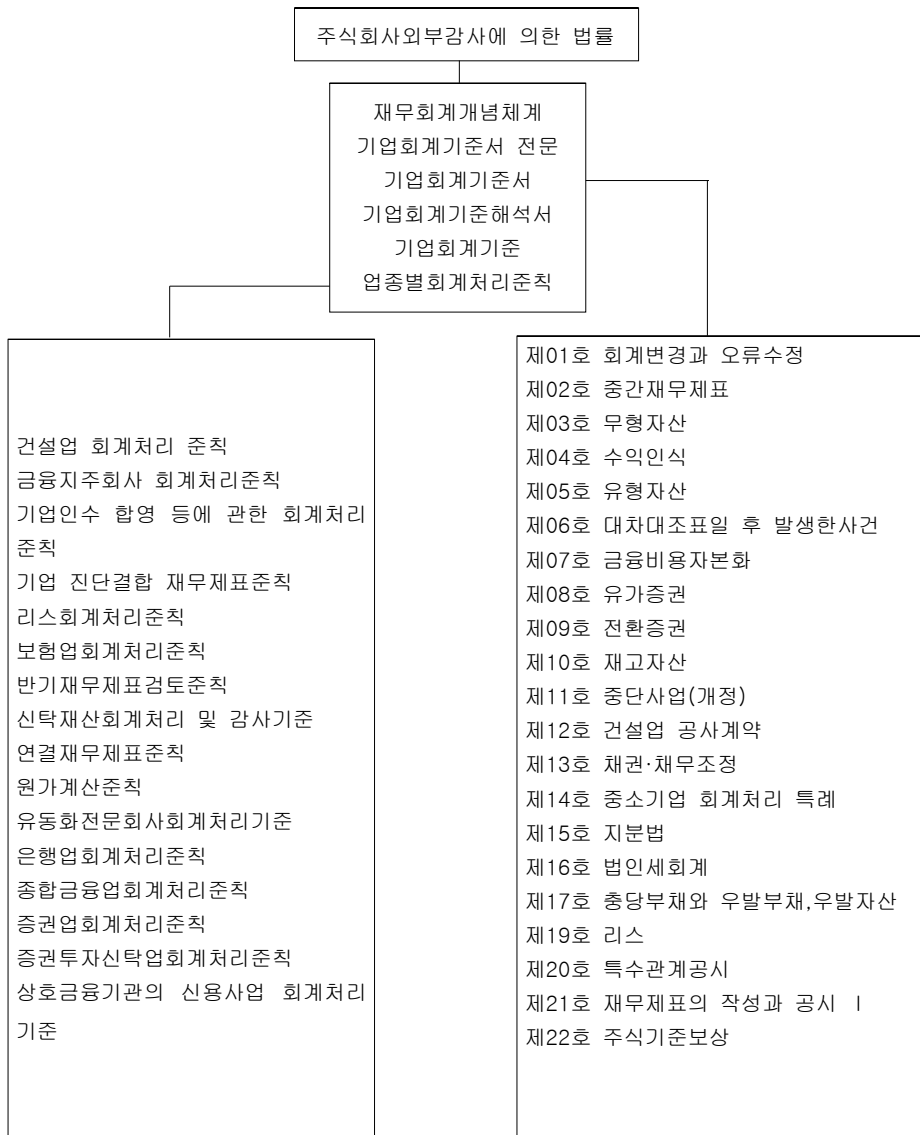
제1절 기업회계기준 체제의 비교

1.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한국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
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이 주된 제정목적이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기업도 원칙적으로 기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재무제표 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전문, 기업회계기
분서(제01호-제22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업종에 따라 회계처리
할 내용 등을 서술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2.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체제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확인, 측정과 보고행위를 규범하고 회계정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등에 따라서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2006년 2월 15일에 다시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상위 구조는 회계법이며 이는 중국회계법규의 기본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이 병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 준칙의 제정은 기본적 준칙에 따라 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에는 기본적 준칙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 준칙은 총 3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 기본적 준칙: 제01장 總則
- 제02장 會計信息質量要求
- 제03장 資產
- 제04장 負債
- 제05장 所有者權益
- 제06장 收益
- 제07장 費用
- 제08장 利潤
- 제09장 會計計量
- 제10장 財務會計報告
- 제11장 附則

구체적 준칙7): 제01호 存貨

7) 《국무원은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에 관한 회답》(국합 [1992] 178호)의 규정에 따라

- 제02호 長期股權投資
- 제03호 投資性房地產
- 제04호 固定資產
- 제05호 生物資產
- 제06호 無形資產
- 제07호 非貨幣性資產交換
- 제08호 資產減值
- 제09호 職工薪酬
- 제10호 企業年金基金
- 제11호 股份支付
- 제12호 債務重組
- 제13호 或有事項
- 제14호 收入
- 제15호 建造合同
- 제16호 政府補助
- 제17호 借款費用
- 제18호 所得稅
- 제19호 外幣折算
- 제20호 企業合并
- 제21호 租賃
- 제22호 金融工具確認和計量
- 제23호 金融資產轉移
- 제24호 套期保值
- 제25호 原保險合同
- 제26호 再保險合同

재정부는 《기업회계준칙》(재정부령제5호)에 대해 개정하고, 개정 후의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을 이미 부무회의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하고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두 38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27호 石油天然氣開采
- 제28호 會計政策、會計估計變更和差錯更改
- 제29호 資產負債表日後事項
- 제30호 財務報表列表
- 제31호 現金流量表
- 제32호 中期財務報告
- 제33호 合併財務報表
- 제34호 每股收益
- 제35호 分布報告
- 제36호 關聯方披露
- 제37호 金融工具列表
- 제38호 首次執行企業會計准則

3. 한·중 기업회계기준 체제의 비교

가. 기업회계기준 목적상의 차이

(1) 기업회계기준 제정목적의 비교

한국 기업회계기준은 그 제정 목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이 주된 제정목적이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기업도 원칙적으로 기업기준에 따라야 한다.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확인, 측정과 보고행위를 규범하고 회계정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등에 따라서 제정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의 제2조에는 "이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설립한 기업에만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목적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함이다. 중국에 회계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국가거시경제관리에 적합해야한다는 것이고 199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준칙》 제11조에 "회계정보는 국가거시경제관리의 요구에 적합해야 하고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내부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었다.

(2) 재무제표 목적의 비교

한국 기업회계기준 제2조 회계의 목적을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의 목적을 재무회계보고는 재무회계정보 이용자가 경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관리 층에게 위탁된 책임이 이행된 상황을 반영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회계목적에 포함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회계목적은 기업내부와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경영정책 및 기업 재무상태를 파악할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두 나라의 회계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회계제도의 국가거시경제관리의 요구 충족 규정은 한국의 회계목적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초점은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은 당연히 정부에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에 있다.

② 회계 목적의 차이는 회계 목적을 확정하는 원칙에서 표현된다.

③ 회계목적의 차이는 회계목적과 기타 회계 개념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다.

나. 회계기준의 구성내용의 비교

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4-2> 와 같다.

<표4-2> 한·중 회계기준 구성내용의 비교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중국의 기업회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장 总则
제2장 대차대조표	제2장 会计信息质量要求
제3장 손익계산서	제3장 资产
제4장 자산, 부채의 평가	제4장 负债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5장 所有者权益
제6장 현금흐름표	제6장 收入
제7장 주식 및 부속명세서	제7장 费用
제8장 부칙	제8장 利润
	제9장 会计测定
	제10장 财务会计报告
	제11장 附则

한·중 양국의 회계기준의 구성내용을 보면 한국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고 중국기업회계기준은 회계요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서와 중국 기업회계준칙의 비교

<표4-3>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와 중국 기업회계준칙의 비교

한국 기업회계기준서	중국 기업회계준칙
제0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01호 存货
제02호 중간재무제표	제02호 长期股权投资
제03호 무형자산	제03호 投资性房地产
제04호 수익인식	제04호 固定资产
제05호 유형자산	제05호 生物资产
제0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제06호 无形资产

제0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07호 非货币性资产交换
제08호 유가증권	제08호 资产减值
제09호 전환증권	제09호 职工薪酬
제10호 재고자산	제10호 企业年金基金
제11호 중단사업	제11호 股份支付
제12호 건설업 공사계약	제12호 债务重组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13호 或有事项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4호 收入
제15호 지분법	제15호 建造合同
제16호 법인세회계	제16호 政府补助
제17호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7호 借款费用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18호 所得税
제19호 리스	제19호 外币折算
제20호 특수관계공시	제20호 企业合并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1	제21호 租赁
제22호 주식기준보상	제22호 金融工具确认和计量
	제23호 金融资产转移
	제24호 套期保值
	제25호 原保险合同
	제26호 再保险合同
	제27호 石油天然气开采
	제28호 会计政策, 会计估计变更和差错更改
	제29호 资产负债表日后事项
	제30호 财务报表列表
	제31호 现金流量表
	제32호 中期财务报告
	제33호 合并财务报表
	제34호 每股收益
	제35호 分部报告
	제36호 关联方披露
	제37호 金融工具列表
	제38호 首次执行企业会计准则

라. 일반원칙의 비교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뢰성의 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명료성의 원칙: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충분성의 원칙: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요성의 원칙: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안전성의 원칙: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실질성의 원칙: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실성의 원칙: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의거해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2. 유용성의 원칙: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명료성의 원칙: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비교가능성의 원칙: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5. 실질중시의 원칙: 기업은 거래나 사건의 경제실질에 따라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6. 전면성의 원칙: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 등과 관련된 모든 거래나 사건을 반영해야 한다.

7. 신중성의 원칙: 기업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할 때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8. 적시성의 원칙: 기업에 이미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을 표를 작성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4〉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비교표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1. 신뢰성의 원칙	1. 진실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충분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계속성의 원칙	4. 비교가능성의 원칙
5. 중요성의 원칙	5. 실질중시의 원칙
6. 안전성의 원칙	6. 전면성의 원칙
7. 실질성의 원칙	7. 신중성의 원칙
	8. 적시성의 원칙

제2절 재무제표 체제의 비교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정보 요구를 위해 작성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는 특수한 목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정보이용자의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재무제표는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를 포함하며 이러한 재무제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구조성기술이다. 재무제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 ① 자산부채표 (資產負債表)
- ② 이윤표 (利潤表)
- ③ 현금흐름표 (現金流量表)
- ④ 소유자권익변동표 (所有者權益變動表)
- ⑤ 부조 (附注)

위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재무제표의 종류는 중국의 재무제표에 소유자권익변동표와 부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사하다고 본다. 하지만 양국의 기업회계기준이 성립한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상 차이는 많다.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4-5 한·중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비교〉

한국의 재무제표	중국의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	1. 자산부채표 (資產負債表)
2. 손익계산서	2. 이윤표 (利潤表)
3. 현금흐름표	3. 현금흐름표 (現金流量表)
4. 자본변동표	4. 소유자권익변동표 (所有者權益變動表)

1. 대차대조표의 비교

가. 한국 대차대조표

한국의 대차대조표의 정의를 보면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고서이며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와 자본이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성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되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성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성된다.

자산의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당좌자산의 주요 계정: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재고자산의 주요 계정: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투자자산의 주요 계정: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기타의 투자자산.

유형자산의 주요 계정: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주요 계정: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부채의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유동부채의 주요 계정: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이익, 단기부채선충당금, 기타의 유동부채.

고정부채의 주요 계정: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선충당금, 이

연법인세대, 기타의 고정부채.

자본의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본잉여금의 주요 계정: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주요 과목: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

자본조정액의 주요 계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나. 중국 대차대조표

중국의 대차대조표(資產負債表)는 기업이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그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자본)으로 구성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된다. 소유자권익(所有者權益)은 납입자본금(實收資本), 자본공적금(資本公積)⁸⁾, 잉여공적금(盈餘公積)⁹⁾, 미분배이익(未分配利潤)¹⁰⁾으로 구성된다.

자산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貨幣資金), 미수 및 선급비용(應收及預付款項), 거래성투자(交易性投資), 재고(存貨), 持有至到期投資.

비유동자산: 장기주식투자(長期股權投資), 투자부동산(投資性房地產), 고정자산(固定資產), 생물자산(生物資產), 체연소득세자산(遞延所得稅資產), 무형자산(無形資產).

8) 한국의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다.

9) 한국의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다.

10) 미처분이익으로서 이익잉여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익이다.

부채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유동부채: 단기차입금(短期借款)、미지급 및 선수비용(應付及預收款項)、미지급세금(應交稅金)、미지급급여(應付職工薪酬)、예수금(預計負債).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長期借款)、장기미지급비용(長期應付款)、미지급채권(應付債券)、체연소득세부채(遞延所得稅負債).

소유자권익(자본)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지분: 납입자본금、자본공적금、잉여공적금、미분배이익.

표를 만들어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4-6〉 한·중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분류에 대한 비교

분류	중국 企业会计准则	한국 기업회계기준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미수 및 선급비용、거래성투자、재고、持有至到期投資 비유동자산은 장기주식투자、투자부동산、고정자산、생물자산、체연소득세자산、무형자산	유동자산、고정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자본	납입자본금、자본공적금、잉여공적금、미분배이익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한 자세한 계정과목도 〈표4-7〉에서 보는 비교 같이 차이가 있다.

〈표4-7〉 한·중 대차대조표에 대한 비교

한국의 대차대조표	중국의 자산부채표
<p>자산</p> <p>I. 유동자산</p> <p>(1) 당좌자산</p> <p> 현금 및 현금등가물</p> <p> 단기금융상품</p> <p> 유가증권</p> <p> 매출채권</p> <p> 단기대여금</p> <p> 미수금</p> <p> 미수수익</p> <p> 선급금</p> <p> 선급비용</p> <p> 기타의 당좌자산</p> <p> 당좌자산 합계</p> <p>(2) 재고자산</p> <p> 상품</p> <p> 제품</p> <p> 반제품</p> <p> 원재료</p> <p> 저장품</p> <p> 기타의 재고자산</p> <p> 재고자산 합계</p> <p> 유동자산 총계</p> <p>II. 고정자산</p> <p>(1) 투자자산</p> <p> 장기금융상품</p> <p> 투자유가증권</p> <p> 장기대여금</p>	<p>자산</p> <p>I. 유동자산</p> <p> 현금 및 현금등가물(货币资金)</p> <p> 미수 및 선급비용(应收及预付款项)</p> <p> 거래성투자(交易性投资)</p> <p> 재고(存货)</p> <p> 持有至到期投资</p> <p> 유동자산 합계</p> <p>II. 비유동자산</p> <p> 장기주식투자(长期股权投资)</p> <p> 투자부동산(投资性房地产)</p> <p> 고정자산(固定资产)</p>

<p>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기타의 투자자산 투자자산 합계</p> <p>(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유형자산 합계</p> <p>(3)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계</p> <p>자산 총계</p> <p>부채</p> <p>1.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p>	<p>생물자산(生物资产) 체연소득세자산(递延所得税资产) 무형자산(无形资产) 비유동자산 합계</p> <p>자산 총계</p> <p>부채</p> <p>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初期借款) 미지급 및 선수비용(应付及预收款项)</p>
---	--

<p>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이익 단기부채선충당금 기타의 유동부채 유동부채 합계</p>	<p>미지급세금(应交税金) 미지급급여(应付职工薪酬) 예수금(预计负债) 유동부채 합계</p>
<p>II. 고정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성충당금 이연법인세대 기타의 고정부채 고정부채 합계 부채 총계</p>	<p>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长期借款) 장기미지급비용(长期应付款) 미지급채권(应付债券) 체연소득세부채(递延所得税负债) 비유동자산 합계</p>
<p>자본 (1) 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 (3) 자본조정</p>	<p>부채 총계 소유자권익(자본) 납입자본금 자본공적금 잉여공작금 미분배이윤</p>

자본총계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부채와 소유자권익 총계

위의 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차대조표 공식은 "자산=부채+자본(소유자권익)" 이고 자산, 부채와 자본은 구분해서 표시된다.

비록 양국의 대차대조표의 양식은 많이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계정의 분류상 차이가 많이 있다.

중국의 대차대조표에 자본을 소유자권익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미분배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본조정도 중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금융상품, 영업권 등 무형자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

2.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 한국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며 기본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 ②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 손익을 계산한다.
- ③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을 차감해서 경상손익을 계산한다.
- ④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특별손실을 차감해서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을 계산한다.

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손익을 계산한다.

나. 중국의 이윤표 (利潤表)

이윤표는 기업이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재무보고서이며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수익, 비용과 이익이다.

중국 이윤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① 주영업무수익(主營業務收入)에서 주영업무원가(主營業務成本)、주영업무세금 및 부가(主營業務稅金及附加)를 차감해서 주영업무이익(主營業務利潤)을 계산한다.

② 주영업무이익(主營業務利潤)에서 기타 업무이익(其他業務利潤)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營業費用)、관리비(管理費用)、재무비(財務費用)을 차감해서 영업이익(營業利潤)을 계산한다.

③ 영업이익(營業利潤)에서 투자수익(投資收益)、보조수익(補貼收入)、영업외수익(營業外收入)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지출(營業外支出)을 차감해서 이익총액(利潤總額)을 계산한다.

④ 이익총액(利潤總額)에서 소득세(所得稅)를 차감해서 순이익/손실(淨利潤/虧損)을 계산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국과 중국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겠다.

〈표4-8〉 한·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비교

한국 손익계산서	중국 이윤표
I. 매출액	I. 주영업무수익(主營業務收入)
II. 매출원가	주영업무원가(主營業務成本)
	주영업무세금 및 부가(主營業務稅金及附加)
	II. 주영업무이익(主營業務利潤)
	기타 업무이익(其他業務利潤)
III. 매출총이익	영업비(營業費用)

IV.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비(管理费用)
V. 영업 손익	재무비(财务费用)
영업외수익	III. 영업이익(营业利润)
영업외비용	투자수익(投资收益)
VI. 경상손익	보조수익(补贴收入)
특별이익	영업외수익(营业外收入)
특별손실	영업외지출(营业外支出)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IV. 이익총액(利润总额)
법인세비용	소득세(所得税)
VIII. 당기순손익	V. 순이익/손실(净利润/亏损)

한국과 중국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의 원칙 및 손익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원칙을 사용하고 양식은 모두 보고서식으로 계단식계산서를 채택한다.

양국의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주영업무이익은 주영업무수익에서 주영업무 원가와 주영업무세금 및 부가를 차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2) 영업비용에 관한 데에 있어서 한국 손익계산서에서는 모든 영업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 하나로 표시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따로 구분해서 각각 영업비, 관리비, 재무비로 표시하고, 기타업무이익을 가산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3) 투자수익에 대해서 한국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만 중국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영업이익에 가산 한다.

(4) 한국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경상이익이 산출되고, 중국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에서 먼저 투자수익, 보조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총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중국의 이익총액은 한국의 법인세차감 전에 순손익과 같은 개념이다.

3. 현금흐름표의 비교

가. 한국의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나. 중국의 현금흐름표 (現金流量表)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일정 회계기간에 현금과 현금등가물이 유입과 유출한 상황을 반영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중국 현금흐름표도 한국처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각각 현금유입과 유출의 총액으로 표시된다. 외환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 발생한 당시에 환율로 환산하여 환율로 인한 현금변동이 있을 때 그 현금에 대해 조정해야 하고 현금흐름표에서 단독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표를 작성해서 한·중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표4-9〉 한·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비교

한국 현금흐름표	중국 현금흐름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量)	I. 경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量)

<p>1. 매출등 수익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销售等产生的现金流入)</p> <p>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营业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p> <p>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入)</p> <p>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量)</p> <p>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入)</p> <p>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V. 현금의 증가(Ⅰ+Ⅱ+Ⅲ) (现金的增加Ⅰ+Ⅱ+Ⅲ)</p> <p>V. 기초의 현금(期初现金)</p> <p>VI. 기말의 현금(期末现金)</p>	<p>1. 현금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入)</p> <p>2. 현금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p> <p>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入)</p> <p>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量)</p> <p>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入)</p> <p>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财务活动产生的现金流出)</p> <p>IV. 환율변동이 현금에 대한 영향 (汇率变动产生的现金流量)</p> <p>V.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순 증가액 (现金及现金等价物的净增加额)</p>
--	---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현금흐름표는 그 항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4. 자본변동표의 비교

가. 한국의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이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변동표에는 소유자의 투자와 소유자에 대한 분배, 그리고 포괄이익

(소유자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칙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소유주의 투자는 현금, 재화 및 용역의 유입, 또는 부채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기업실체의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현금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실체의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정보와 더불어 당해 기업실체의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다.

나. 중국의 소유자권익변동표 (所有者權益變動表)

소유자권익변동표는 소유자권익을 구성한 각 구성부분이 당기에 있어서 증감변동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당기손익, 직접 소유자권익에 계상하는 이익과 손실, 및 소유자와의 자본거래로 인해서 초래한 소유자권익의 변동은 표시되어야 한다.

소유자권익변동표에서 최소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순이익

(2) 직접 소유자권익에 계상한 이익과 손실의 항목 및 그 금액

(3) 회계정책변경과 착오정정의 누계금액

(4) 소유자가 투자한 자본과 소유자에게 분배한 이윤 등

(5) 규정에 따라 인출한 잉여공적금

(6) 납입자본, 자본공적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윤의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조 절상황.

제3절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의 비교

1. 한국의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원칙으로서 취득원가주의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며 교환, 증여, 현물출자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취득원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 간의 교환시에는 구자산 장부가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다. 한편 자본화 금융비용의 계상범위를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서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까지 확대하여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시 감액처리하고, 감액처리후 시가 회복시에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저가주의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평가에 있어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¹¹⁾.

(2) 채권의 평가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가기준,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¹²⁾, 취득원가 산정시에는 재고자산의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투자주식의 평가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에 지분법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투자주식중 시가 또는 순자산 가액이 하락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을 경우 지분법의 경우에는 이미 그 효과가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나, 시가법이나 원가법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자산가치 하락분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

11)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증가에 의하며 유가증권의 공정가액평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실질을 보다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가액 평가법을 도입한 것이다.

1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저가기준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가기준에 의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며,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보수주의를 인정하는 회계처리이다.

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¹³⁾.

(5)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6)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은 역사적원가로서 취득원가이며 취득원가란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될 수 있지만 보통 구입에 의하거나 자가건설에 의하여 취득된다¹⁴⁾.

(7) 무형자산의 평가시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며, 정액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고, 다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부채의 평가기준에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사채발행차금의 처리시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10)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거래에서

13) 또한 감액 후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시가법의 경우 그 효과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만 원가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시가 회복분을 당기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산이 공정가치로 계상될 수 있게 하였다.

14) 구입에 의한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에누리·리베이트·현금할인이 있으면 이들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자가건설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소요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성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¹⁵⁾.

(1) 채권채무의 재조정시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채권채무가 재조정되는 경우 그 재조정 이후의 채권채무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명목가치와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대손상각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며,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2. 중국의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의 실제원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이 현물출자 또는 무형자산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하며 이미 공고하였지만 수취하지 못한 현금배당금 또는 지급기한이 되었지만 수취하지 못한 채권이자는 단독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단기투자의 원가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¹⁶⁾.

(2) 수취채권과 선급금은 계약 혹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고, 수취채권과 선급항목은 화폐별로 장부를 만들어 기장해야 하며, 대손충당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자산부채표에 수취채권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계상하는 대손충당금의 기준 및 대손손실의 인식시기에 대해서는 재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의 대손상각은 관리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대손상각을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해야 한다. 이미 상각된 수취채권이 회수되면 대

15) 적용할 이자율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채권 채무의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실제 부담하고 있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채권 채무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

16) 배당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고, 그 배당금과 이자부분은 임시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미수계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수익, 유가증권의 처분 또는 상환손익은 투자손익으로, 처리하여 영업외수입 또는 영업외 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손충당금 또는 관리비용의 대변에 기장한다.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대손손실이 1년간 계상된 대손충당금부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기의 관리비용에 산입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당기의 관리비용에서 감하며, 회수확인된 상각채권은 당기 관리비용에서 차감한다.

(3)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운임, 하역요금, 각종 보험료,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정상감모손실, 입고전 분류 및 경리비용과 각종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계획원가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계처리한 기업은 계획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분리하여 계산하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속기록법을 채택한다. 역사적 원가에 따라 평가한 자산은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총계법 등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확정할 수 있다.

(4) 주식투자는 실제지급액 또는 투자계약서, 협의서 등에서 약정된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액에 거래비용 등 관련비용을 합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실제지급액에 이미 선언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시계정인 미수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5) 채권투자는 실제지급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실제지급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계정인 미수계정에서 회계처리한다. 할증 또는 할인발행한 채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지급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채권만기 전에 상각하고, 그에 상응한 수입이자과 장기투자의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상각방법으로는 직접법 또는 유효이자율법을 채택할 수 있다.

(6)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운송비, 선적 및 하역비, 보험료 등의 비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친 금액이고,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유형자산은 계약서에 약정된 가액에 기업부담의 부대비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액에 기업부담의 부대비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친 금액이고, 사용된 유형자산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해야 한다¹⁷⁾.

1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며, 정액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속상각법은 일반적으로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만 채택할 수 있다. 다른 감가상각방법인 200% 정율법을 채택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보고와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독립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구분공시 해야 한다. 기업이 개업준

(7) 무형자산의 평가시에는 반드시 소유권증서 복사본, 평가의 계산근거와 표준 등의 관련 명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그중 기술 노하우, 경영특허권과 영업권의 평가는 권위있는 기구 혹은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투자자가 투자한 무형자산은 계약서, 협의서 또는 기업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및 기업이 부담하는 관련비용을 근거로 하며, 기증된 무형자산은 단독 혹은 유사한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3. 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 평가비교

중국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만이 인정될 뿐 저가주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는 취득시의 실제원가만이 인정되는 원가주의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총계법만 인정될 뿐 매출가격환원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유형자산평가에서는 취득원가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증여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련법규에 따라 유형자산가치를 확정하고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과 가속상각법만 인정할 뿐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투자자산의 평가를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특정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원칙으로 하며 사채발행에 있어서 양 국가는 동일하게 액면금액으로 표시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채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채권채무의 재조정, 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국고보조금등의 처리, 파생상품의 처리, 자본조정의 처리, 회계변경, 우발상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의 <표4-10>에 정리하였다.

비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준공시에 완전 상각하거나, 또는 건설공사기간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개업준비기간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처리해야 한다.

〈표4-10〉 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의 평가 비교

구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중국의 기업회계기준
1. 유가증권의 평가	-취득원가(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말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	-취득원가주의
2. 채권의 평가	-순실현가능가액(대손충당금설정)	-대손충당금(환장준비금)설정
3. 재고자산의 평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매출가격환원법 적용	-취득원가주의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후입선출법만 적용
4. 투자채권의 평가	-취득원가(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상환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후 자본조정	-주식투자자와 기타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원가법 혹은 지분법을 적용 -채권투자의 경우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가액에 걸쳐 취득원가에 가감
5. 유형자산의 평가	-취득원가(제작원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 가산)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취득원가주의를 원칙 -중여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소정요 건시 생산량비례법과 가속상각법)
6. 무형자산의 평가	-취득원가(제작원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 가산) -감가상각(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제원가로 자본투자자로 받은 무형자산은 약정가격으로, 자가

	등 합리적인 방법)	개발무형자산은 실제지출액으로 함.
7. 부채의 평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
8. 사채발행차금의 평가	-최종상환까지 유효이자율법 적용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각·환입(정액법이나 유효이자율법 적용)
9. 채권·채무의 현재 가치에 의한 평가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한 가액	
10. 채권·채무의 재조정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11. 기타의 평가	-파생상품의 처리 -자본조정의 처리 -회계변경 및 우발상황 -대차대조표 후에 발생한 사건	-외화항목의 기말잔고는 결산일환율로 평가하고, 그 차액은 환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

제4절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의 비교

1.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환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AS No.18)에서 수익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 특정 기간동안 유입된 총경제적 효익으로 주주의 기부와 관련된 증가이외에 지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로얄티와 배당이 발생하는 기업자산의 타인에 의한 사용에 대한 인식기준을 정하고 있다. 수익인식을 위하여 적용된 회계방침, 산출된 수익금액, 각 수익 범주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은 공시하여야 한다.

(1) 한국의 수익 인식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이란 특정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에 따른 자본 증가액을 의미하며, 재화의 생산,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실체의 주요 영업활동을 그 발생원천으로 하고, 영업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수입수수료,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료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수익인식의 일반기준으로 인도기준과 진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익의 구체적인 인식시기를 수익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품·제품의 매출액은 상품·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넷째,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섯째,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수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2) 중국의 수익 인식기준

기업의 영업수익은 주영업수입과 기타영업수입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인식하며, 주영업수입은 업종에 따라 매출수입, 영업수입, 공사수입, 각종 노동 또는 용역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인식의 기준으로서 인도기준, 공사완성기준, 용역제공기준

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입금기준, 대금결제기준, 할부판매기준, 공사진행기준도 인정하고 있다.

수익의 구체적인 인식시기는 수익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품 또는 상품의 인도, 완공된 공사 및 용역의 인도내지 제공과 대금의 수취 또는 수취권리의 취득 시 영업수익을 인식한다.

둘째, 생산물상환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은 투자자가 생산물을 분배취득할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할부판매에 대하여서는 송장작성일 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입금 일에 의하여 영업수익을 인식한다.

셋째, 장기공사계약은 공사의 진행도 혹은 실제 완공한 작업량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영업수입을 인식한다. 영업수익은 실제수취액 또는 수취할 금액으로 기장하고, 매출환입은 영업수익에서 차감하며, 매출할인 및 에누리는 별도로 계산하여 이윤표에서 영업수익의 차감항목으로 별도 처리해야한다.

넷째, 기타영업이익은 기타영업수입에서 기타영업지출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기타영업이익은 공업기업이라면 주요영업수입이외의 운송업수입, 대리판매 및 상품수탁수수료수입, 재료매각수입, 포장품대출매각수입등을 말하며, 기타영업지출은 이에 따른 수입의 원가, 비용, 관련세금 등을 나타내고 있다.

2. 비용의 인식

(1) 한국의 비용 인식기준

기업회계기준은 비용 및 손실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발생으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고 함으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 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인식되어야 하고, 만약 대응되지 않거나 대응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 즉시 인식하는 방법으로

소비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관련수익이 인식된 기간과 같은 기간에 보고되어야 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표시는 첫째 매출액과 매출원가, 둘째, 매출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 셋째 영업이익과 영업외비용, 넷째 경상이익과 특별손실, 다섯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용의 인식은 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소비가 그 발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거나, 그 소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2) 중국의 비용 인식기준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소모, 노동의 보상 및 각종 비용은 거래의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원가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었으나 차기의 비용인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인식하며, 규정된 원가항목과 비용항목에 따라 생산 및 경영기간에 발생한 각종 지출을 집계해야 한다. 또한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익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하여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인식하여야 한다.

원가와 비용의 범위의 구분은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품생산 직접비용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비용, 즉 관리비용, 재무비용, 및 매출원가 등은 기간비용으로서 이윤표에 독립항목으로 구분 공시한다¹⁸⁾.

18) 판매비용은 판매 및 용역 제공과정 중에 기업이 부담하여 하는 운송비, 선적 및 하역비, 포장비, 보험료, 판매수수료,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광고비, 임차료, 판매서비스 및 판매부문의 영업비를 포함한다. 판매부문의 영업비에는 급료 및 임금, 여비, 감가상가비, 수선비, 판공비, 소모품비, 저가소모품상각액과 기타비용 등이 있다. 관리비용은 회사의 경비, 노동조합 경비, 이사회비, 소송비, 자문비, 교체접대비, 세금, 토지사용료, 기술이전료, 무형자산 상각액, 기타자산 상각액, 대손상각, 종업원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관리비용 등이 있다. 재무비용은 지급이자(수입이자차감), 외환차손(외환차익차감), 금융기관수수료 및 기타재무활동에 의한 비용이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동종업무의 정상이자율로서 결정한다.

3. 한국 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한국과 중국의 수익인식기준을 살펴보면, 위탁판매의 경우 한국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인식하나 중국은 위탁판매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할부판매의 경우에도 한국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지만, 중국은 송장 작성일 또는 할부금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이 인식되는 것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장기공사를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공사진행기준 혹은 공사완성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간비용의 인식에 있어 한국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합하여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판매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재무비용의 인식시 지불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계상하고, 외환차손의 경우에도 외환차손에서 외환차익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관련된 수수료를 재무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표4-11> 한·중의 수익·비용인식 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4-11> 한국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구분	한국	중국
----	----	----

1. 일반매출	-인도기준(판매기준)	-인도기준(판매기준)
2. 위탁매출	-수탁자가 판매한 날	-위탁판매보고서 수령일
3. 시용매출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4. 용역매출·예약매출 (도급공사 포함)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
5. 할부매출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이자 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송장작성일 또는 회수일
6. 수출매출	-본선 선적완료일	
7. 부동산매출(토지·건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기능일 중 가장 빠른 날	
8. 이자수익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현금수취시점	-지불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차감(재무비용)
9.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경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비용
10. 기간비용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11. 이자비용	-기간경과분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으로 인식	-재무비용의 지불이자

제5장 결 론

한국의 중국 투자활동은 중국 사회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라 많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제체제와 사회환경의 차이에 따라 회계법규, 회계처리방법, 표현양식 등의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중국 교역활동에서 회계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고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차이점을 도출해냄으로써 한·중 회계기준의 이론연구와 회계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의 회계제도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회계개혁이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 회계기준의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은 상이한 회계제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외감법에 준거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반면, 중국은 회계법에 의해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2) 한국은 정치적·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목적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회계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회계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즉 정보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거시경제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해석하는데 기업의 내부경영관리를 강화하는데 있다.

(3) 일반원칙에 있어서 한국의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원칙 등을 자산·부채평가 기준과 수익·비용 인식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나, 중국의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의 일반적 기준에 일괄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4) 한국은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중에서 목적적합성과 적시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목적적합성보다 신뢰성을 우선하고 있다.

(5) 재무제표에 있어서 한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

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요 재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부속장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6) 중국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에서 발생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의 인식에는 현금주의도 채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회계제도의 개혁이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자.

중국은 개방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들여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회계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개방 초기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회계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영미식 회계제도를 대폭 수용한 개혁정신이다¹⁹⁾.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대륙식 회계제도를 과감히 버리지 못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전면적으로 도입된 영미식 제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마치 대륙식 ‘몸’에 영미식 ‘옷’을 걸쳐 어정쩡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개혁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상법」이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²⁰⁾.

중국의 회계제도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중국이 비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대전제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를 회계기준제정에 있어서 여타의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최우선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자본시장과 회계산업의 미성숙을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못하지 않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이에 비해 한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독자적 체계의 구축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준거기준의 선택 및 수용이며,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대폭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KASB의

19) 사실 구소련의 회계제도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것이므로, 개방이전 중국의 전통회계제도는 대륙식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방이후 대륙식 제도를 포기하고 영미식 제도로 이해해 간 셈이다.

20) 상법의 회계관련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본회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

노력이 한국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켜 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장지인 외,2001), 그와 동시에 아직까지도 국제회계기준을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강설화. 2004 중국회계제도의 변천과 개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기명. 200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5집 제2호
- 김옥태. 2003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원주. 2004 한국과 중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접근. 인하대 경영대학원
- 김현진. 2003 국제회계기준을 준거로 한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 김현희. 2003 중국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 문용호. 1998 한·중 회계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무현. 1997 중국의 회계기준과 회계실무. 경영경제논집
- 이향순. 2001 한·중 회계기준의 비교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제. 2000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발전적 과정과 조직구조에 관한 소고」, 조선대 경영경제연구 Vol.23 No.1.

중국문헌

- 企業會計制度,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2008
- 金融企業會計制度,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2008
- 沈英, 中國會計制度的發展及其國際趨同, 2006
- 陳振風, 新旧企業會計制度之比較研究, 2005

유관 사이트

<http://www.mof.gov.cn>,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회계학과	학 번	2007770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포립 영문 : Bao Li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연락처	E-MAIL : gpkim@chosun.ac.kr				
논문제목	한글 : 한·중 기업회계기준의 비교연구 영어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8년 12월 10일

저작자: 포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